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1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이동욱 성장동력정책과장(02-2110-4754), 임채욱 사무관(4755) 이봉락 신기술지원과장(02-509-7286), 박성유 연구관(02-509-7287)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관계부처·기관,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총력 지원키로 -

□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10.6일 시행)을 계기로 새로 도입한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11.11월1일(화) 16:00,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인증·시험기관 전문가 등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개별 법령상에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여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내 인증을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

○ 동 설명회에는 개별 법령상에서 실제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개 관계부처, 15개 인증·시험기관의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적합성인증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부처간·기관간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 동 설명회에서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절차 상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였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태양광LED 보안등」**에 대한 **적합성 모의인증 진행 경과와 실제 적용사례를 발표**하였음

* 트럭지게차(국토부), USN계량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무체인 전기자전거(기표원) 등에 대해서도 적합성 인증 진행 중(11월 완료 예정)

○ 이어 적합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인증·시험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해 별도의 토론 시간**을 가졌음

□ 참석자들은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성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최대 6개월내 새로운 기준 마련에서 시험·검사까지 완료해야 하는 실제 운영상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 적합성인증제도의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치**, 즉, **신속한 인증**(Fast-Track)과 **제품의 안정성 검사** 사이에 **적절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성공사례'의 도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적합성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음

□ 지식경제부 **차동형 신산업정책관**은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 담당자의 전향적인 시장 우호적인 마인드**와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인증 담당자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인증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지경부는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협력하여 **「적합성인증지원반」을 운영**하여 인증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적합성인증 세부절차 등을 추가 설명**하고 **관계부처, 인증·시험기관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

○ 또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주체인 **기업 등에게도 적합성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산업융합촉진정책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임

* 대전(10.21일), 광주(10.24일)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에 대구, 부산 등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참고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최 배경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0.6일)을 계기로 **적합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상의 혼선 방지**를 위해 설명의 장 마련

- 개별 법령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관계부처, 인증·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인증제도의 세부절차 및 내용 중점 설명**

□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11. 11. 1(화) 16:00~17:3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 참석 대상

-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정책과 및 기표원 신기술지원과 사무관
- (관계부처) 개별 법령상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 방통위, 식약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 (인증·시험기관) 관계부처로부터 인증 제도 운영을 위임·위탁 받은 인증·시험기관 전문가 등

□ 주요 내용

○ 산업융합촉진법 주요내용 설명(성장동력정책과)

○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수행 절차(기표원 신기술지원과)

○ 태양광 LED 적합성 모의인증처리 진행 절차(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적합성인증 관련 손해보장사업 설명(자본재공제조합) 등

○ 토론 및 Q&A

참고2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참석대상 부처 및 기관 현황

부처명	관련법령(대상품목명)	법운영 부서	수임·수탁 기관
		담당과	기관명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기술표준원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계량에 관한 법률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안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에너지안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관리과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녹색기술 경제과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법 (정수기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토양지하수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대기환경보전법	교통환경과	-
	소음진동규제법	교통환경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산재예방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전파정책기획과	국립전파연구원

국토 해양부	선박안전법 (선박용물건·소형선박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해사기술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산울산중소기업청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측정기기와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공단
	항공법	항공기술과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인력기재과	-
소방 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기계·기구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	소방산업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약청	약사법	의약품안전정책과	-
	화장품법	화장품정책과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정책과	-

참고3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참석대상 부처 및 기관 현황

□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내 Fast-track으로 인증하는** 지원 절차 마련

*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신청)** 적합성인증 신청은 **소관 부처의 장**(위탁:인증기관)에게 하되, 소관 부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문** 요청

○ **(심사) 적합성인증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준 등을 마련**(최대 90일 이내)한 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실시**(60일 이내)

* 관계부처 공무원, 인증·시험기관 전문가,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 **(인증) 안정성 등 문제가 없고 새로운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인증** 처리. 필요시, 유효기간 등 조건부 인증 가능

○ **(이의신청)** 적합성인증 거부 등 경우에 **60일 이내에 소관부처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소관부처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

< 적합성인증 세부처리 절차 >

